

보험계약이전 공고

당 지점은 보험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계약이전을 인가 받아, 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보험업법 제145조에 따라 다음의 각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인가일: 2018년 12월 5일
2. 보험계약 이전 기준일: 2019년 1월 1일
3. 보험계약 이전의 요지: 당 지점이 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으로 이전하며,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은 이전된 보험계약에 대해 당 지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

2019년 1월 2일

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9층 (전화: 02-397-0336)

스위스재보험 주식회사 한국지점
대표자 이 효 식